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-112호

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: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안이유

○ 공공기관 위탁·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기준을 구체화하고,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위탁·대행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·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기준 구체화 (안 제4조)

나. 성과평가 기준 구체화 및 평가 결과 활용·사후관리 강화 (안 제17조)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6년 11월 4일

나. 제출사항
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

- 주소 : (30151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
- FAX : (044) 300-7219 / E-mail : zian1121@korea.kr

라. 문의처 : (044) 300-7313

붙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”을 “설립 목적과 위탁·대행사무의 관련성 및 전문성”으로 한다.

1. 직접 수행, 민간위탁 등 다른 사무 수행방식과의 비용 및 서비스의 질 비교

제6조제4항 본문 중 “임기는 그”를 “위원의 임기는 그”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행하는데”를 “수행하는 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관리하는데”를 “관리하는 데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매년 위탁·대행사무의 수행 성과, 서비스의 질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및 위탁·대행사무의 계속 여부 등에 반영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수탁·대행기관에 개선을

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탁·대행의 적정성 검토)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사무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. 다만, 제8조제1항의 사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.	제4조(위탁·대행의 적정성 검토)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1. 직접 수행, 민간위탁 등 다른 사무 수행방식과의 비용 및 서비스의 질 비교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4. 수탁기관·대행기관(이하 “수탁·대행기관”이라 한다)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4. ---------- ---------- -- 설립 목적과 위탁·대행사무의 관련성 및 전문성
5. ~ 7. (생 략)	5. ~ 7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탁·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) ① ~ ③ (생 략)	제6조(위탁·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공무원인 임기는 그 직위의	④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 위원의 임기는 그

재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
제14조(경비의 부담 등) ① 시장은 수탁·대행기관이 위탁·대행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.	제14조(경비의 부담 등) ① ----- ---------- ------ 수행하는 데 -------- ----------.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3.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	3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관리하는 데 --------
4.·5. (생 략)	4.·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정산 및 평가) ① (생 략)	제17조(정산 및 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매년 위탁·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.	② 시장은 매년 위탁·대행사무의 수행 성과, 서비스의 질 및 비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.
<신 설>	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위탁·대행사무의 계속 여부 등에 반영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수탁·대

	행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.